

2025학년도 2학기 학력진단평가 1학년 형법 [OX형] 답안

시험일시 : 2025.09. 05.(금) 10:00 ~ 11:20
출제교수 : 홍승희 교수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	○	24년8모-문1	대판 2023.7.17., 2017도1807 전합
2	○	23년10모-문1	대판 2020도16420 전합
3	X	23년(12회) 변시-문9	행위시란 범죄의 (실행)행위 종료시를 의미하므로(94도563), 구법 시행시 행위가 종료한 경우 구법인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4	X	24년10모-문1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5	○	23년8모-문1	대판 2022.12.22., 2020도16420 전합
6	X	24년(13회) 변시-문6	속인주의는 범죄지의 속지주의와 중복되어 이중처벌의 가능성이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형법 제7조는 “ <u>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u> ”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필요적 산입).
7	X	23년(12회) 변시-문16	대판 2018.9.13., 2018도7658
8	○	24년8모-문5	대판 2015. 11. 12., 2015도6809 전합
9	X	25년(14회) 변시-문3	[근거적시 요] 대판 1988.6.28., 88도650 (행위 전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 살인죄의 죄책에는 영향이 없다.
10	X	23년6모-문5	대판 2004.6.24., 2002도995
11	○	22년(11회) 변시-문6	대판 2003.8.19., 2001도3667
12	○	25년(14회) 변시-문17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판 2021.5.27., 2020도15529)
13	X		[근거적시 요] 보증인지위에 대해 착오가 있는 경우, 보증인지위를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여 고의가 조각됨
14	○	25년(14회) 변시-문6	대판 2023.10.18., 2022도15537 (박사방사건)
15	○	23년8모-문2	대판 2018.1.25., 2017도12537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16	X	23년8모-문4	손괴죄는 과실범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특수상해미수죄만 성립
17	0	22년10모-문3	
18	X	23년8모-문3	'공동정범'은 공동의 실행의사를 필요로 함. 그러나 '과실범'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부주의로 발생하는 범죄이므로, 과실범에는 공동의 실행의사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음. 따라서 공동하여 범죄를 실현한다는 견해(공동정범의 엄격한 요건론)에 따르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인정될 수 없음.
19	0	23년10모-문3	대판 2022.12.1., 2022도1499
20	X	21년(10회) 변시-문6	[근거적시 요]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만을 의미한다.
21	0	23년(12회) 변시-문1	대판 2008.11.27., 2008도7311
22	X	24년(13회) 변시-문4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대판 1993.10.8., 93도1873)]
23	X	23년(12회) 변시-문3	대판 1999.10.12., 99도3377
24	0	24년10모-문6	대판 2023.4.27., 2020도6874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25	0	22년10모-문4	긴급피난 자구행위 모두 다른 보전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6	X	24년(13회) 변시-문11	대판 1980.5.2.0, 80도306
27	0	21년(10회) 변시-문1	대판 1983.2.8., 82도2486; 1992.4.24., 91도3239
28	X	23년8모-문5	
29	X	22년6모-문4	대판 2010.7.23., 2010도1189 전합
30	0	24년(13회) 변시-문15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31	0		
32	X		
33	X	23년8모-문6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불필요하다는 불필요설은 불법의 본질이 결과반가치에 있다고 해석하는 결과반가치론에 따른 결론임
34	0		손괴죄의 기수범이 성립한다는 견해는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상쇄되어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원적 불법론의 입장에 따른 것
35	X		결과반가치만을 고려하게 된다면 甲이 무죄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됨
36	X	21년(10회) 변시-문2	대판 2018.9.13., 2018도7658; 2007.2.8., 2006도7900
37	0	22년(11회) 변시-문7	대판 2020.10.22., 2020도4140 전합
38	0	22년6모-문5	[근거적시 요] 형법 제10조 제1항, 제2항. 2018년 개정으로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필요적 감경이 아닌 임의적 감경으로 법적 효과가 변경되었음
39	0	22년6모-문5	대판 1995.2.24., 94도3163
40	X	25년(14회) 변시-문16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 (대판 2021.11.25., 2021도10903)
41	0	2년8모-문5	대판 2006.3.24., 2005도3717 [표준 75]
42	0	23년(12회) 변시-문18	대판 2021.11.25., 2021도10903
43	0	23년8모-문4	제한적 종속성설, 엄격고의설,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교사자(乙)에 대한 교사범의 고의가 조각되어 상해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
44	0	21년(10회) 변시-문4	대판 99도424; 91도436 등
45	0	23년8모-문7	대판 2009.10.28., 2009도7150

번호	정답	출처	[근거적시 요] 이유
46	0	24년10모-문8	강도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미필적으로라도 기본범죄인 강도를 범할 목적이 필요하며 준강도의 목적이 있음에 그친 때에는 강도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876 판결)
47	X	22년10모-문6	[근거적시 요] 모든 미수범은 주관적 요건으로서 기수의 고의를 요함
48	X	25년(14회) 변시-문4	대판 2005.12.8., 2005도8105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
49	0	22년6모-문8	대판 1997.6.13., 97도957]
50	X	23년(12회) 변시-문2	대판 2005.12.8., 2005도8105
51	0	22년(11회) 변시-문11	대판 2010.7.15., 2010도3544
52	X	24년8모-문18	대판 2019.8.29., 2019도8357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참조)” .
53	X	23년(12회) 변시-문6	대판 2019.8.29., 2018도2738
54	0	22년(11회) 변시-문8	대판 2018.2.8., 2016도17733
55	X	22년8모-문7	[근거적시 요] 극단적 종속형식을 취하는 입장에서는 정범에게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갖춰줘야 교사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함
56	X	23년6모-문7	효과없는 교사는 제31조 제2항, 실패한 교사는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함
57	0	22년(11회) 변시-문8	대판 2002.6.28., 2000도3045
58	X	24년(13회) 변시-문11	[1] 피고인이 丙을 모해할 목적으로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상, 가사 정범인 乙에게 모해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u>모해위증교사죄</u> 로 처단할 수 있다. [2] 형법 제31조 제1항은 혐의의 공범의 일종인 교사범이 그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고,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이 있는 자가 신분이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大判 93도1002).
59	0	24년6모-문6	대판 2021.9.9., 2017도19025 전합
60	X	24년6모-문6	대판 2021.9.9., 2017도19025 전합